

2020년도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운영안내

2020. 06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목 차

I.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개요

- 1. 사업 소개 1
- 2. 지원 제도 2

II.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 요령 개정사항

- 1. 현재 세계일류상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5
- 2.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 현재 세계일류상품 승격 심사 시기 5
- 3. 세계일류상품 자격 제외 유예기간 부여 5
- 4.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 추가 5
- 5.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이원화 6
- 6.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예외기준 추가 6

III. 2020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계획

- 1.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7
- 2. 선정 추진 일정 9

IV. 선정 단계별 세부 운영지침

- 1. 모집 및 접수 10
- 2. 추천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12

[붙임1]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 관련 양식 15

[붙임2] 추천위원회 관련 양식 22

[붙임3]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개정 예정) 30

[붙임4]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목록 별도 송부

I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개요

1. 사업 소개
2. 지원 제도

1. 사업 소개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수출 상품의 다양화·고급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추진근거)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부 공고)
- (사업내용)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하여 마케팅, 금융·컨설팅 등 종합 패키지 지원

□ 선정 대상

- (선정구분) 현재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구분
 - (현재)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 상품과 생산기업
 - (차세대) 향후 7년 이내에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과 생산기업

□ 선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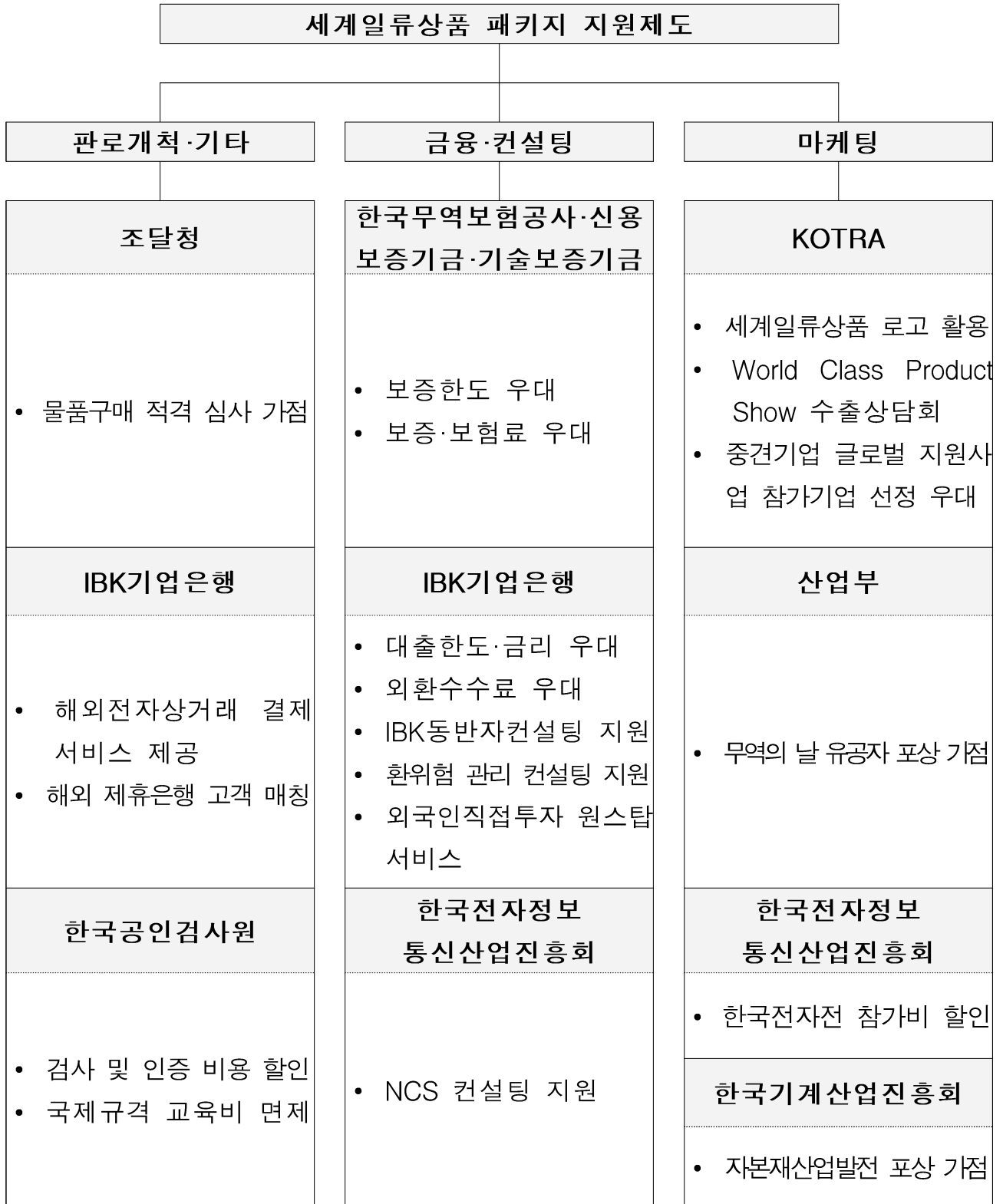
- 신규 선정과 자격 심사를 통해 총 817개 상품, 917개 기업 자격 유지('01~'19)

< 연도별 세계일류상품 선정 현황 >

구분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상품	현재	55	125	154	180	249	308	370	388	387	376	405	444	461	476	484	502	524	536	550
	차세대	65	156	199	260	256	215	214	207	197	177	186	190	178	185	196	237	259	248	267
	합계	120	281	353	440	505	523	584	595	584	553	591	634	639	661	680	739	783	784	817
생산기업	현재	80	176	210	239	306	363	432	459	451	450	477	523	543	560	562	576	597	610	633
	차세대	60	164	209	276	282	231	227	205	195	169	182	187	184	190	202	248	272	266	284
	합계	140	340	419	515	588	594	659	664	646	619	659	710	727	750	764	824	869	876	917

2. 지원 제도

□ 세계일류상품 패키지 지원제도 체계



□ 세계일류상품 패키지 지원제도 세부내용

구분	담당기관	지원 내용	대기업 지원								
판로 개척	조달청	○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 가점(0.2점)	○								
	IBK 기업은행	○ 해외전자상거래 판로개척 지원 - 수출대금 결제서비스(페이고스) 제공 ○ 해외 제휴은행 고객 매칭 서비스 제공(IBK TradeClub)	X								
금융·자금 조달	한국무역보험공사	○ 보증·보험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선적전·NEGO·선적후), 단기수출보험 ○ 보증·보험료 할인혜택	X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목</th> <th>할인내역</th> </tr> </thead> <tbody> <tr> <td>단기수출보험</td> <td rowspan="3">할인율(20%) 적용</td> </tr> <tr> <td>서비스종합보험 (일시결재방식)</td> </tr> <tr> <td>수출신용보증 (선적전·선적후)</td> </tr> <tr> <td>수출신용보증 (NEGO)</td> <td>차감료율(0.1%) 적용</td> </tr> </tbody> </table>		종목	할인내역	단기수출보험	할인율(20%) 적용	서비스종합보험 (일시결재방식)	수출신용보증 (선적전·선적후)	수출신용보증 (NEGO)	차감료율(0.1%) 적용
		종목		할인내역							
		단기수출보험		할인율(20%) 적용							
서비스종합보험 (일시결재방식)											
수출신용보증 (선적전·선적후)											
수출신용보증 (NEGO)	차감료율(0.1%) 적용										
신용보증기금	○ 우대부문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 - 보증한도 우대 : 최고 30억원 보증한도 ○ 유망 창업기업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 - 보증료 우대 : 보증료율(0.2%p~0.4%p) 차감	X									
	기술보증기금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정 - 보증한도 우대 : 각 기업당 최고보증한도 50억원(일반보증 30억원) ○ 기술혁신 선도형기업 지정 - 기술평가지 우대 - 우선적 보증지원	X								
IBK 기업은행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상품(IBK강소기업대출)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우대 : 별도 한도 없이 내부 심사 과정을 통해 책정 - 대출금리 우대 : 최대 1.0%p 범위 내 대출금리 추가 감면 ○ 외환수수료 우대 - 수출환어음 매입 환가료율 및 수입 신용장 개설수수료 우대 ○ 외국인직접투자(FDI) 원스탑 서비스 제공 ○ 환율시황 MMS·이메일 서비스 	
컨설팅	IBK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K동반자컨설팅 - 경영·세무·회계·창업·그린·법률·IP·인증·수출입 등 ○ 환위험관리 컨설팅 무료 지원 - 환위험 관리체계 수립, 헤지방법 및 비율 제시, 헤지상품 안내 등 ○ 해외전자상거래(CBT) 멘토 전문교육 ○ 전자상거래 맞춤형 무료 컨설팅 제공 	X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기업활용 컨설팅 지원 	X
포상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시 가점 	O
	한국기계산업진흥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재산업발전 포상시 개발 유공자·유공기업 부문에 가점 	O
기타	한국공인검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및 인증 서비스 비용 할인(10%) ○ 국제규격 관련 교육 참가시 교육비 면제(최대5인) 	O
사업 선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참가기업 선정 우대 	X
전시 참가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자전(KES) 참가지원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공동관 참가시 참가비 할인(20%) * 최소 10개사 이상으로 공동관 구성 - 해외 초청 바이어 상담주선 	O

Ⅱ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 요령 개정사항

1. 현재 세계일류상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2.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 현재 세계일류상품 승격 심사 시기
3. 세계일류상품 자격 제외 유예기간 부여
4.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 추가
5.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이원화
6.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예외기준 추가

1. 현재 세계일류상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 현재 세계일류상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1년→3년)
 - 제도운영 설문조사 결과, 근거 자료 제출이 가장 큰 애로사항(60%)
 -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등 사례(3년)
 - 매년 자격 심사 준비 부담으로 이탈 기업 지속 발생(최근 3년간 총 33개 상품, 38개사)
- * 상품 생산 중단 및 기업 폐업 등 인증 무효 여부 매년 조사하여 제외 반영

2.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 현재 세계일류상품 승격 심사 시기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최초 품목 선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선정 기업 요청시 승격 심사 가능
- * 현재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불이익 없음

3. 세계일류상품 자격 제외 유예기간 부여

- (현재) 일시적 대내외 상황 변화 및 산업 특성(생산 및 수출에 장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현재 선정기준 미충족시, 매년 심의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유예기간 부여 가능
- * 산업보고서, 산업 특성 등을 검토하여 회복 전망의 경우에 한해 유예 여부를 매년 결정하며, 부정적 전망시 유예기간 내 제외 가능
- (차세대) 선정 후 7년이 도래한 시점에 현재 선정기준을 미충족하나 꾸준한 성장세로 향후 승격 가능성이 높은 상품 및 기업에 매년 심의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유예기간 부여 가능
- * 추천위원회 평가근거를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개선된 경우에 한해 유예 여부를 결정하며, 부정적 전망시 유예기간 내 제외 가능

4.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이원화

- 현재와 차세대 간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상이하여 구분 필요

< 현재/차세대 선정 평가시 필요 정보 >

구분	현재	차세대
상품	① 세계 주요 국가별 해당 상품 생산 및 시장점유율	① 국가 및 신청 기업의 해당 상품 매출 및 수출 실적, ② 지적재산권, ③ 인증 및 수상
생산기업	① 세계 주요 기업별 해당 상품 생산 및 시장점유율, ② 국내 주요 기업별 해당 상품 수출실적	① 국내 주요 기업별 해당 상품 수출실적, ② 기업 전체 매출 및 수출 실적, ③ 영업이익, ④ R&D 투자액

5.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 추가

- 성격이 유사한 타기관 사업을 선정기준에 추가하여 선정대상 범위 확대(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300)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 >

기 존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신제품 인증 기업 ○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 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기업 ○ 월드클래스300 지정 기업

< 타기관 유사 사업 주요 내용 >

구분	수출유망중소기업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 300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출실적 ② 기술 인증 ③ 산업재산권 ④ 해외시장개척 ⑤ 연구개발비 ⑥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술 가치 ② 산업재산권 ③ 가격수준 ④ 시장규모 ⑤ 품질경영 ⑥ 제품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술 가치 ② 가격경쟁력 ③ 시장규모 ④ 품질경영 ⑤ 제품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격경쟁력 ② 기술차별성 ③ R&D 투자 ④ 지식재산권 ⑤ 매출액 ⑥ 수출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출실적 ② 연구개발 ③ 투자실적 ④ 자금조달
유효기간	2년	3년	3년	4년	5년

6.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예외기준 추가

- 대내외 환경 변화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 및 생산기업은 발전심의회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받을 시 선정 가능
* ex) 코로나19로 수요가 확대되어 수출 실적 폭증('20년 3월~5월 기준)

Ⅲ 2020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계획

1.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2. 선정 추진 일정

1.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 선정 기준

- 현재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구분

<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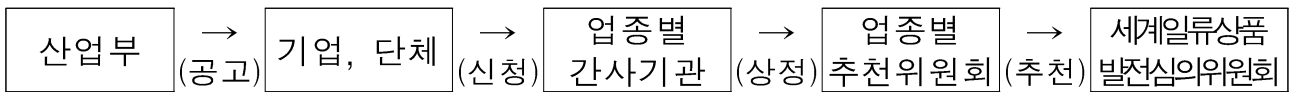
구분		선정기준
현재 세계 일류	상품	<p>해당 상품이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일 것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일 것 <p>단, 서비스업 상품은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여도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p>
	생산기업	<p>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차 세 대 세계 일류	상품	<p>해당 상품이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p>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선정할 수 있다.</p>
	생산기업	<p>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이나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4.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5.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6.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p>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선정할 수 있다.</p>

□ 선정 방법

- ① 신규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기준 모두 충족시 선정
- ② 기존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생산기업 추가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만 충족하면 선정
- ③ 기존 선정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상태 변화(분할·인수합병)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만 충족하면 선정
 - * 상품 소유권 관련 증빙 별도 접수 필요
 - ** 수행사에서 자격유지 심사를 통해 상품 선정기준 검증

□ 선정 절차

<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절차 >



- ① (산업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 ② (업종별 간사기관) 산업부의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모집 및 접수

< 세계일류상품 업종별 간사기관 목록 >

연번	간사기관	업종 구분
1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생활용품
2	한국신발산업협회	
3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4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	
5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6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생물·화학
7	한국바이오협회	
8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지털전자
9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반도체·전자부품
10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11	한국전기산업진흥회	

12	한국광산업진흥회	산업기계·플랜트
13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14	한국기계산업진흥회	
15	한국플랜트산업협회	
16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수송기계
17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18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19	한국철도차량산업협회	
20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철강금속·석유화학
21	한국석유화학협회	
22	한국철강협회	
23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농산물
2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건산업
25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26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7	대한화장품협회	
28	한국식품산업협회	
29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비스산업
30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31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32	KOTRA(강소중견기업팀)	해당 간사기관 없는 품목

- ③ (업종별 간사기관) 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KOTRA에 추천
- ④ (KOTRA)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확정
- ⑤ (산업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공고

2. 선정 추진 일정

시 기	주요 내용	일 정
6월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 요령 개정 공고	06.15(월)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06.16(화)~07.31(금)
8월	업종별 추천위원회	08.10(월)~08.21(금)
10월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10월 中
11월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공고	11월 中
12월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12월 中



IV 선정 단계별 세부 운영지침

1. 모집 및 접수
2. 추천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1. 모집 및 접수

□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작성 지원

- 회원사 및 비회원사 대상 신청 안내 및 참여 독려
 - 유선, 이메일 및 홈페이지 공지 등
- 세계 시장현황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간사기관 보유 자료 활용하여 신청서 작성 지원

□ 신청서 검토 및 보완 요청

- 품목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 사용
 - 업종별 간사기관은 신청기업에서 명기한 세계일류상품 품목명이 협소하거나 광범위한 경우 신청기업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신청서 접수 시 기존 선정품목과의 중복 또는 유사성 검토
- 당초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신청 받았으나 선정기준에 미달하여 선정이 어렵지만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재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
- 현재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간 유사 상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 간사기관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리스트화 필요

□ 신청서 신뢰성 검증

- 업종별 간사기관은 신청기업의 해당품목 수출실적의 경우 무역협회 통계(KITA) 원칙
 - 해외에 공장이 있는 경우 등 불가능할 경우 주거래은행에서 받

급하는 수출실적 확인서류, 기업 내부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

-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수출, 대행수출, 간접수출 등을 포함
 - 서비스업 품목의 경우 상기 수출액 외에 ① 해외판매계약액 중 당해연도 입금액, ② 국내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매출액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 생산액 및 수출액 인정 범위 >

구 분	내 용
생산액	국내 생산총액 및 국내 기업(모기업이 한국 국적)의 해외 생산총액 합산
수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① 직접수출, ② 대행수출, ③ 간접수출 등을 모두 포함(단, 해외 현지공장 수출은 미포함) ○ 수출액 인정은 수출통관액(관세청 집계로 무역협회가 확인) 기준 ○ 서비스업 품목으로 수출통관액이 집계되지 않는 경우 ㉠ 해외 판매 계약액 중 당해연도 입금액, ㉡ 국내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 매출액의 합산으로 산정

- 세계시장규모, 시장점유율은 신청기업에 해당 수치를 추정할 근거를 확인하고, 입증자료를 검토
-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보고서나 국내 증권사가 배포하는 기업동향, 해당 품목에 대한 국내외 언론 보도자료, 업종별 협회 혹은 간사기관 등을 통한 자료 모두 가능
 - Display Bank(디스플레이뱅크), i-Supply(아이서플라이), Clarkson(클락슨), Gartner(가트너), SERI(삼성경제연구소) 등
- 업종별 간사기관은 신청기업에서 제작한 일반상거래에서 홍보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신청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것이 없는지 확인
- 업종별 간사기관은 신청기업의 기술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 보도자료 등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 검토
- 신청서 작성 중 부득이하게 작성하지 못하는 부분은 신청서에 사유를 명기하도록 유도(선정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작성)

2. 추천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 추천위원회 구성

- 업종별 간사기관은 신청서류에 대한 추천심의를 위해 요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품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신청기업과 경쟁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 및 기업에 소속된 전문가를 추천위원으로 위촉 불가
-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추천위원회 운영

- 추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사 업종의 2개 이상의 간사기관이 공동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대표 간사기관에서 신청품목을 취합하여 추천위원회 개최 가능
- 신청품목 중 해당 업종의 간사기관이 없는 경우 KOTRA가 추천위원회 개최
- 업종별 간사기관에서 접수 시에 신청품목이 해당 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타 간사기관으로 이관 가능
- 업종별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세부사항은 KOTRA와 상의

□ 추천위원회 심의

- 신청서류 심의
 - 추천위원은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

정 신청서, 제품 홍보자료, 기술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 보도자료 등을 검토

- 추천위원은 신청 서류의 내용이 현재 및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의 요건에 충족되는지에 대해 심의
- 특히 차세대 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주어진 평가표 양식에 따라 추천위원별로 신청품목 및 생산기업에 대해 평가

○ 종합토론

- 추천위원장은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경우 비공개로 종합토론을 실시
- 추천위원장은 종합토론을 실시함에 있어서 추천위원에게 균등한 토론의 기회를 부여
- 종합토론 완료 후 현재 및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의 추천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의 추천 품목수가 다수일 경우 반드시 추천 순위를 정하여 추천, 추천순위는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순으로 정하는 것을 권고함

○ 기타

- 업종별 간사기관은 필요시 신청기업체에 제품을 시연 및 설명
- 업종별 간사기관은 추천위원회에 제공한 심의자료를 취합하여 보관
- KOTRA는 필요시 업종별 간사기관에 추천위원회 심의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종별 간사기관은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

□ 추천위원회 결과 검토 및 상정

- 추천시 탈락품목에 대한 검토의견도 같이 제출
- 업종별 간사기관은 추천위원회 개최 후 업종별 추천위원회 추천 기한까지 추천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KOTRA에 제출

- ① 공문(신청건수, 추천건수 포함)
- ②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후보 추천위원회 평가서
- ③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후보 추천위원회 심의서
- ④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후보 추천위원회 종합심의서
- ⑤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추천양식
- ⑥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추천총람표
- ⑦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 ⑧ 현재/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 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⑪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중소·중견)
- ⑫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 추천위원회 관련 예산지원 및 서비스 제공

- 추천위원회 개최지원금 : 1개 기업 이상 추천시 120만원
- 추천 인센티브 : 추천에 의해 선정된 기업 1개사당 20만원
⇒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이후 간사기관 계좌로 추천위원회 개최지원금 및 추천 인센티브 지급
- 해외 무역관과 연계하여 해외시장 관련 데이터 제공(연 10회 내)

[붙임1]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 관련 양식

현재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현재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상품			<input type="checkbox"/> 기선정 상품(생산기업 추가)				
상품 정보	구분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업			
	상품명	국문						
		영문						
	HS코드 (10단위)							
상품소개	사진			설명				
기업 정보	기업명	국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주소	국문							
	영문							
기업소개								
신청 사유	상품	※ 기선정 품목에 생산기업 추가시 작성 불요						
		연번	주요 내용(전년도 기준)			선택	비고	
		1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			<input type="checkbox"/>	필수	
		2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input type="checkbox"/>	각 호중 하나	
		3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input type="checkbox"/>		
	4	세계시장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업		
	생산 기업	연번	주요 내용(전년도 기준)			선택	비고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			<input type="checkbox"/>	각 호중 하나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액 1위			<input type="checkbox"/>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input type="checkbox"/>		
신청 근거	1. 세계 주요 국가별 해당 상품 생산 및 시장점유율(전년도 기준)							
	※ 기선정 품목에 생산기업 추가시 작성 불요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위	세계
	국가명							
	생산액(백만불)							
	비중(%)							100
생산량()								
비중(%)							100	

* 한국이 5위 이내 없을 경우, 공란에 별도 기입

** 생산량 단위 필수 기재 후 수치 기입

자료출처 : _____

2. 세계 주요 기업별 해당 상품 생산 및 시장점유율(전년도 기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위	세계
기업명							
소속국가							
생산액(백만불)							
비중(%)							100
생산량()							
비중(%)							100

* 자사가 5위 이내 없을 경우, 공란에 별도 기입

** 소속국가는 해당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명 기입

*** 생산량 단위 필수 기재 후 수치 기입

자료출처 : _____

3. 국내 주요 기업별 해당 상품 수출실적(전년도 기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위	국내
기업명							
수출액(천불)							
비중(%)							100

* 자사가 5위 이내 없을 경우, 공란에 별도 기입

**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① 직접수출, ② 대행수출, ③ 간접수출 등 모두 포함(단, 해외 현지공장 수출 미포함)

*** 서비스업 상품의 경우 상기 수출액 이외 ① 해외판매계약액 중 당해연도 입금액, ② 국내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 매출액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자료출처 : _____

**담당자
정보**

성명	직책	전화	이메일

* 개인정보 작성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인 필요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된 기업 - 지정기관/지정일 : ()			
	5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정기관/지정일 : ()	<input type="checkbox"/>		
	6	최근 2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 지정기관/지정일 : ()	<input type="checkbox"/>		
	7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에 수출 실적이 급증한 상품의 생산기업	<input type="checkbox"/>		
신청 근거	1. 해당 상품 및 신청기업 관련 주요 지표(최근 3개년)				
	구 분	Y-2	Y-1	Y(전년도)	연평균 성장률(%)
	기업의 해당 상품 매출액(백만원)				
	기업 전체 매출액(백만원)				
	기업의 해당 상품 수출액(천불)				
	기업 전체 수출액(천불)				
	국가의 해당 상품 수출액(천불)				
	영업이익(백만원)				
	영업이익률(%)				
	R&D 투자액(백만원)				
R&D 투자비율(%)					
<p>* 한국무역협회 통계사이트(K-stat) 내 품목 수출입 메뉴에서 해당 상품의 HS코드를 입력하여 국가 수출액 확인 가능</p> <p>**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① 직접수출, ② 대행수출, ③ 간접수출 등 모두 포함(단, 해외 현지공장 수출 미포함)</p> <p>*** 서비스업 상품의 경우 상기 수출액 이외 ① 해외판매계약액 중 당해연도 입금액, ② 국내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 매출액도 수출실적으로 인정</p> <p>****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p> <p>***** R&D 투자비율 = R&D 투자액 / 매출액</p> <p>***** 연평균 성장률 = $(Y/Y-2)^{(1/3)}-1$</p>					
2. 신청기업의 해당 상품 관련 지적재산권 현황(국내외 합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운영 및 직·간접수출지원 사업 안내, 사후F/U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이메일 주소, 사무실 번호,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운영 및 지원제도 안내, 추진, 성과관리, 사후F/U, 차기 사업 안내 등을 위해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귀하의 정정, 삭제 요구가 있을 때까지 보유합니다.
 - 제공해 주신 개인 정보는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운영 및 수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수행사로 선정된 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 수집 항목은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 성명 1 (인)
 성명 2 (인)
 성명 3 (인)
 성명 4 (인)
 성명 5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2]

추천위원회 관련 양식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후보 추천위원회 평가서

< 추천위원회 심의 사항 >

1. 본 평가서는 '기업 및 상품평가', '심사자 자율평가'의 두 항목으로 구성
2. 각 항목의 배점은 기업 및 상품평가 100점, 심사자 자율평가 ±10점으로 배정
3. 기업 및 상품 평가는 5단계(매우 긍정 - 긍정 - 보통 - 부정 - 매우 부정)으로 평가
4. 추천위원의 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평가 결과를 '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로 결정
5. 3인 이상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평가가 '가'인 경우 최종 후보로 추천하며 총점 합계에 따라 추천순위 결정

□ 기업 및 상품 평가

기업명										
상품명										
항목	요소	평가근거	질문	배점	매우긍정 -- -- 매우부정					
기업	경쟁력	종업원수, 부설연구소 유무, R&D투자액, 유관기관사업, 영업이익 등	① 기업은 기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R&D 활동 및 투자에 적극적인가?	15	15	12	9	6	3	
			② 동종산업군 평균을 고려하여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평가할 때, 자산을 안정적,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미리 제시된 업종별 평균치를 고려하여 자율적 평가	10	10	8	6	4	2	
	성장성	매출액, 수출액, 수출전담인력, 특허인증 등	③ 향후 기업의 매출 및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	15	15	12	9	6	3	
			④ 기업은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 특허 및 인증 취득, 전담인력 보유 등 마케팅 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가?	15	15	12	9	6	3	
상품	시장성	특허 및 인증, 수상실적 등	⑤ 해당 상품의 특허 현황 등을 평가할 때, 해당 상품의 핵심기술은 모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체 가능성이 희박하여 희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10	10	8	6	4	2	
			⑥ 해당 상품의 국내외 인증 및 수상경력을 평가할 때, 해당 상품은 외부로부	10	10	8	6	4	2	

성 장 성	상품설명 (시장규모, 수출규모), 서비스품질 인증, 등	터 가치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가?						
		⑦ 향후 해당 상품의 매출 및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	15	15	12	9	6	3
		⑧ 해당상품은 타 산업 발전 및 국가 수출확대에 파급효과가 높아 상품 가치가 높은가?	10	10	8	6	4	2
총 점	100점		점					

□ 심사자 자율평가

심의 의견	점수 (최대 ±10점)
※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예시되지 않은 심의위원의 주관적 평가 기술 (최대 ±10점을 총 평가 점수에 합산)	점

□ 심의위원 평가 종합

평가 점수			심의 결과	
기업 및 상품평가	자율평가	총점		
점	점	점	가	부

상기 추천위원회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소 속: _____

직 위: _____

성 명: _____ (인)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후보 추천위원회 심의서

간사기관 : ○○○○○

현재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현재 세계일류상품 후보			심의의견	추천	
연번	상품	생산기업		상품	생산기업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후보			심의의견	추천	
연번	상품	생산기업		상품	생산기업

상기 추천위원회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후보 추천위원회 종합심의서

간사기관 : ○○○○○

현재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현재 세계일류상품 후보			추천 가 / 부	
연번	상품	생산기업	상품	생산기업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후보			추천 가 / 부		추천순위
연번	상품	생산기업	상품	생산기업	

종합의견					

20
위원장 : (인)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추천 양식

세계일류상품	구분	현재() 차세대()	
	품목명		
	한국의 해당품목 수출 (단위: 백만불, 전년말 기준)		
	- 현재: 세계시장점유율(순위) (단위: %) - 차세대: 경쟁력		
	해외경쟁업체		
상품설명			
상품분류	HS CODE(10단위)		
상품유사성	<input type="checkbox"/> 기존선정상품과 유사	<input type="checkbox"/> 과거탈락상품과 유사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유사성에 대한 상세설명	기존 품목 중 유사 상품명: (선정연도:) * 기존 선정되었던 상품과 유사함에도 선정된 이유를 상세히 기재		
추천 및 탈락사유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기업명	
	기업의 해당 상품 수출 (단위: 백만불, 전년말 기준)	
추천 및 탈락사유		

※ 추천사유는 현재세계일류상품(상품 및 기업), 차세대세계일류상품(상품 및 기업)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업종별 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추천 총람표(별도 송부)

추천총람표(상품)										추천총람표(기업)					
간사기부명 :															
원지 일류상품				차세대 일류상품				원지 일류상품 생산기업				차세대 일류상품 생산기업			
순번	품목명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 등)	추천사유	품목명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 등)	추천사유	추천순위	기업명	수출품목	추천사유	기업명	수출품목	추천사유	추천순위	
1															
2															
3															
4															
* 차세대 일류상품 및 기업은 반드시 추천순위 기재															
추진권 원지 및 차세대 수		개수													
총 상품 수		개													
총 기업 수		개													
총 상품 및 기업 수		개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간사기관 : ○ ○ ○ ○ ○

일시 : 20 . . (00:00)

장소 : ○ ○ ○ ○ ○

연 번	소 속	직 책	성 명	연락처	E-mail	서명

[붙임3]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요령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9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제정	2002. 8. 22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68호
개정	2005. 3. 17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70호
개정	2005. 9. 26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38호
개정	2006. 7. 24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15호
개정	2008. 7. 31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98호
개정	2009. 4. 16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50호
개정	2010. 5. 28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30호
개정	2010. 11. 2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28호
개정	2012. 6. 5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81호
개정	2013. 5. 1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73호
개정	2014. 6. 2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01호
개정	2015. 8. 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33호
개정	2017. 10. 1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499호
개정	2020. 6. 1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9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등의 수출·수입의 지속적 증대를 통한 무역진흥을 위하여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세계일류상품”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기업(국내법에 의거하여 모기업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설치된 기업을 말한다)이 생산하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상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요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한 상품을 말한다.
2. “현재세계일류상품”이라 함은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가는 점 등을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요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한 상품을 말한다.
3.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이라 함은 향후 7년 이내에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 등을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요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한 상품을 말한다.
4.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라 함은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요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세계일류상품의 확대 및 발전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의 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계일류상품의 선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업
2.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3. 세계일류상품의 기술 및 디자인 개발 등에 관한 사업
4. 세계일류상품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국제협력사업
5. 기타 세계일류상품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업추진체제

제4조(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의 확대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계일류상품발전심

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 대한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3.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세계일류상품의 확대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세계일류상품 담당부서의 실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무역과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5조(업종별 간사기관 및 추천위원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 선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 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업종별로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을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간사기관이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품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업종별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추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 이상의 간사기관이 공동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호, 제2호의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운영기관이 되며,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별로 정하는 기관이 운영기관이 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예산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의 집행 및 정산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세계일류상품의 선정 및 사후관리

제7조(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①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상품이 현재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일 것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상품은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여도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상품이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제3항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은 세계일류상품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세계일류상품 선정절차) ①자사가 생산하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상품이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간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사기관·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단체는 기업의 신청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세계일류상품을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을 받은 간사기관은 신청서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현재세계일류상품 추천안 및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추천안을 각각 작성,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간사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안 작성, 심의 및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간사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세계일류상품 선정안을 작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간사기관의 추천내용이 이 요령이 정한 선정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간사기관과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제출한 세계일류상품 선정안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 ①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상품 생산기업이 현재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②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상품 생산기업이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이나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4.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5.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6.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은 제2항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절차) ①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간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을 받은 간사기관은 신청서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현재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추천안 및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추천안을 각각 작성,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간사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안 작성, 심의 및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④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간사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안을 작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간사기관의 추천내용이 이 요령이 정한 선정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간사기관과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제출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안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11조(인증서 발급 및 변경)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현재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및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하여 선정 사실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또는 그 생산기업을 인수받은 기업 중 상호, 품목명에 대하여 인증서 변경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기존 인증서 원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5. 생산규모, 수출규모 자료(기업 양수도에 의한 상호 변경에 한함)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업체의 변경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된 인증서를 신청업체에 교부한다.

1. 상호 변경 : 선정 당시의 선정요건이 유지되는 경우

2. 품목명 변경 : 선정 당시의 품목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제12조(현재세계일류상품 자격심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재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 대하여 선정 후 3년마다 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산업 특성 등의 사유로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년 심의를 통해 유예 여부를 결정하며, 최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세계일류상품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제13조(차세대세계일류상품 자격심사 및 졸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차세대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 대하여 최초 품목 선정 후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매년 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세대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이 최초 품목 선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심사요청 접수시 현재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현재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전환되며, 최초 품목 선정 후 7년이 경과한 때까지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서 제외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품목 및 생산기업의 수출증가율이 국내 전체 수출품목의 수출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선정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품목 선정 후 7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이 개선되어 향후 현재로 승격 가능성이 높은 상품 및 생산기업

에 매년 심의를 통해 유예여부를 결정하며, 최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세대세계일류상품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는 제외 당시와 비교하여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이 개선되고 향후 3년 이내에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재선정할 수 있다.

제13-1조(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사후관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선정된 이후에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제13조의 자격심사와 관계없이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대표의 횡령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즉시 동 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 이 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도 중단한다.

제14조(자격심사 협조의무) ①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격심사 대상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세계일류상품 발전사업

제15조(세계일류상품 국내외 전시회 개최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의 국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세계일류상품 전시회 및 구매상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 기업의 전시회 참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행사 개최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

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해외전문전시회 참가 또는 마케팅 행사 개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세계일류상품 기술 및 디자인 개발 등에 관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의 기술,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세계일류상품 로고의 사용) ①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자사의 생산제품이 세계일류상품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로고(별지 제3호 서식)를 해당 제품의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로고를 사용하는 기업이 제12조 및 제13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로고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9조(세계일류상품 명품 브랜드 선정·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및 인지도를 갖춘 브랜드를 선정·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의 평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실적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개선방안 등을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지원의 중단 및 축소)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로고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붙임4]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목록(별도 송부)